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
----------	-----

2011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 다. 상정결과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서강석)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규정하고, 종전의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계속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17호, 2011.3.1.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에 규정함(안 제19조의2).
- 나.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11호, 2008. 3.12, 개정)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조합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 다. 건축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도 함께 감면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74조
 「지방세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1.3.17. ~ 2011.3.3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가.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제도 신설(안 제1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 19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 개정(법 제92조의2)되어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하 '세액공제제도')가 2011년 3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동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임.

○ 법의 세액공제제도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임.(법 제92조의2)

※ 공제방법: 사전공제 방식: 산출세액에서 부과·고지전 사전공제하므로 징수결정액에서 제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부과·고지)

▶ 법에 따른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내역

납부방식	세액공제 (고지서 1장당)	조례안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신청	150원 ~ 500원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동시신청	300원 ~ 1,000원	500원

-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임.
- ※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 : 시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구세(면허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 집행부에 따르면 ‘고지서 수령후 자동이체’의 경우는 고지서 송달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금액(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전자고지를 받아 e-tax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서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감안하였다고 하고 있음.
- ※ 고지서 발생비용으로 지방세 부과액 30만원 이상은 일반등기 1,000원, 30만원 미만은 우표값 250원이 소요됨.

▶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 세수감소 예상액

(단위 : 건, 천원)

구분	자동이체 건수	공제금액별 세입감소 예상액			
		150원/장당	200원	300원	500원
2010년 기준	42,873건	6,431	8,575	12,862	21,436

▶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 세수감소 예상액

(단위 : 건, 천원)

구분	전자송달 건수	공제금액별 세입감소 예상액				
		300원/장당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11년 예상	42,873건	12,862	17,149	21,436	30,011	42,873

- 세액공제제도는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이는 바,
-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 세액공제액' 책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를 감안하였으나, 동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는 취지이고, 「시세감면조례」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을 통해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두 조례를 단순 비교하여 세액공제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고지서 수령 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의 경우에도 자동이체가 집행부의 징세비용절감과 행정편의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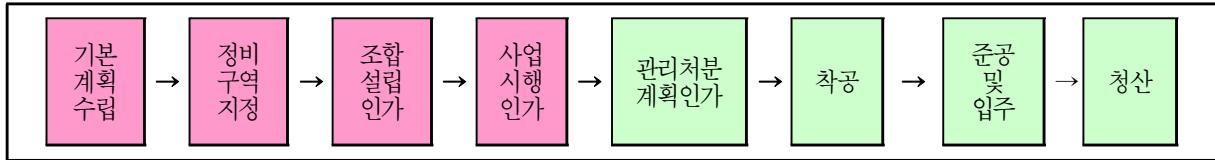
나. 재개발 사업 감면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 19조의 3(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4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제 3항제 3호 및 제 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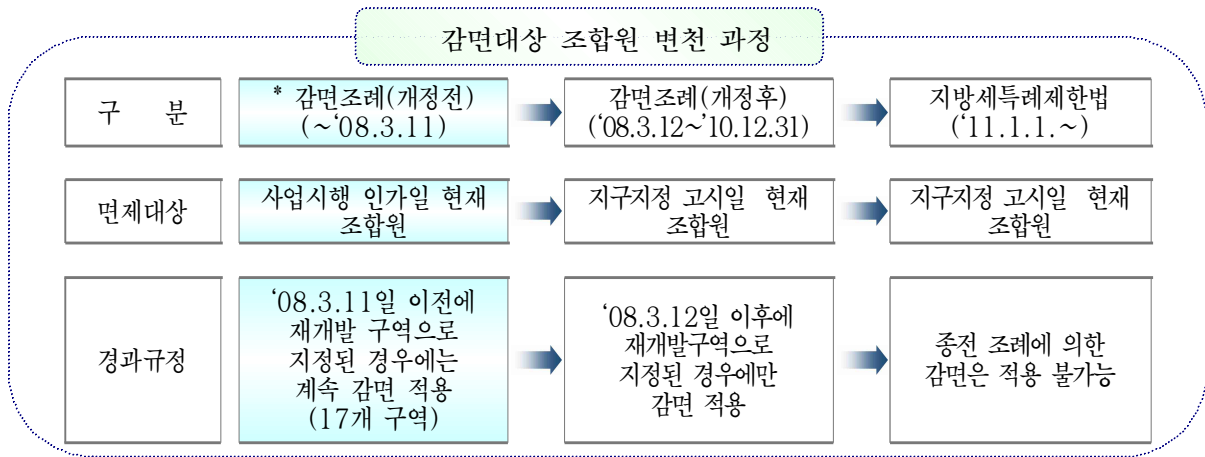
- 본 안건은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나, 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과실에 따라, 종전 조례상 경과규정에 의거한 감면대상자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바, 종전 감면대상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개정전 「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조합원이 재개발 완료후에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사업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인가일 이전에 투자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원주민에 대한 지원취지와는 어긋나게 감면제도가 운영되었음.

-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제171회 임시회('08.2월)에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의 투기목적 소유권이전에 대한 감면혜택을 배제하면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대상자 선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었음.**

▶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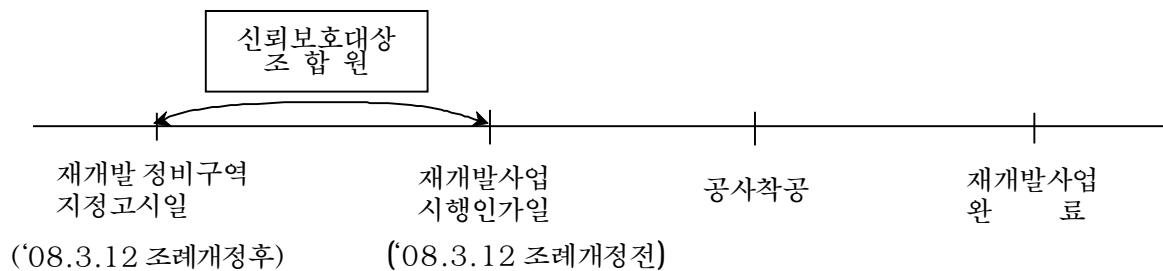
- 조례개정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여 조례시행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견지하였음(참고자료 참조).



-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시세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11.1.1)되면서, 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종전 「시세감면조례」 부칙으로 보호받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사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감면혜택자에 대한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 감면 대상자

- ▶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취득 조합원
- ▶ 조합원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사이 부동산 취득자
- ▶ 예상인원 : 2011.2월 현재 약 40명



○ 제228회 정례회에서 시장이 제출하여 심의·의결된 「시세감면조례」 전문개정조례안의 부칙상에 일반경과규정을 명시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할 때에 명시적인 조항 없이 누락된 부칙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이에 따라 감면대상 조합원에 대한 별도의 감면근거규정 필요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 11168)

· 법률의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지만,

·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할 것임.

※ 「(현행)시세감면조례」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질의)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조합과 비교하여 세제혜택에 있어서 차등을 받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조합에 준하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을 위한 정책적 입안과 배려가 필요함.

(답변) 의원님의 제안을 검토하여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과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19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p>〈 신 설 〉</p>	<p>제19조의3(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p>제21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p> <p>제26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